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8 선고 2024가단178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박이규